

금융산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규제 정립방향에 대한 연구

강 성 호*

<국 문 요 약>

빅테크 기업들은 임베디드 금융을 통해 금융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화도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업권별로 칸막이를 두고 있는 빅 라이선스 체계는 금융 서비스의 언번들링과 리번들링 등의 금융혁신 트렌드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금융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 ICT와 결합하는 금융혁신이 심화됨에 따라 비금융분야의 사고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스몰라이선스,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그룹기반의 금융규제의 도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문 색인어: 플랫폼 기업, 빅테크, 핀테크, 금융혁신, 금융안정, 임베디드 금융, 언번들링, 금융규제, 스몰 라이선스

JEL Code: G10, G18, G20, G28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goku00@naver.com, 010-6679-5136),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본고는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기관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서론

1. 금융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는 생산자와 수요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게 해주는 것에 기반을 둔 사업모델이다(M.Alstein et al, 2016).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는 달리, 플랫폼 비즈니스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오늘날 플랫폼 기업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4월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 5개가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의 기업이며, 2025년경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창출하는 매출액은 전체 글로벌 기업 매출액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WEF, 2018).

반면,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혁신기업들의 진출이 매우 어려운 영역이었다. 경쟁과 혁신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과 같은 가치가 금융산업에서는 더욱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융업도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금융업 역시 플랫폼 비즈니스화²⁾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혁신은 주로 개인·중소기업 대상의 소매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Oliver Wyman, 2020).³⁾ 빅테크·핀테크들은 SNS, 쇼핑, 검색 등의 비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기존 사업과 연계성이 큰 간편결제(electronic payment)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산업에 진입해 왔으며, 이후 소액대출, 보험, 자산관리 등의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R. Zamil & A. Lawson, 2022). 이에 반해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과 같은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진출속도가 더딘 편이다.

2) 금융플랫폼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은 금융플랫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 이루어진 둘 이상의 집단 사이에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

3) 애플은 2014년 지급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16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글은 2015년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구글컴페어를 출시하였다. 아마존은 2011년 아마존 렌딩을 통해 회원사에게 단기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2003년 알리페이를 도입하여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1] 국가별 빅테크의 금융산업 영위정도

		미국				중국			한국		일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네이버	카카오	도코모
소 매 금 융	지급결제	중	고	저	고	고	고	중	고	고	중
	대출	저	고		중	고	고	중	중	중	중
	입출금계좌	저			저	고	고	저	저	중	중
	자산관리					고	고	중	중	중	
對 은 행 서 비 스	데이터제공					고	고	중			
	시스템운영	중	중			고	중				
	데이터관리	중	고			고	고				
	데이터분석	중	중			중	중	중			

출처: Oliver Wyman(2020)을 수정편집(금융업 침투정도에 따라 고, 중, 저로 구분)

2. 금융산업의 플랫폼화에 대한 그간의 논의

금융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융합에 따라,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정립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금융산업의 결합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중국, EU,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금융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분야는 경쟁분야, 데이터, 운영복원력, 소비자보호, 금융안정 등이다(J.Crisanto, 2021). 우리나라의 논의동향도 글로벌 트렌드와 유사하나, 국내의 논의동향을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은 3가지 분야로 나누어진다.

①첫째는 “금융혁신론”이다. 기술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금융산업과 IT 산업의 결합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강신원·이중만, 2016; 김상조, 2016; 박창욱·윤창술, 2018). 이 주장은 특히 금산분리 규제와 같은 소유규제, 영업규제를 완화하여 IT와 금융업의 융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일부 연구는 은행과 기술기업(비은행) 간의 겸업이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실증분석을 제시하기도 한다(김동환, 2021).

②둘째는 “동일기능·동일규제론”이다. 이 주장은 소위 공정한 경쟁조건을 의미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로 이어진다.4) 플랫폼 기업들이 수행하는 금융업에도

4) 레거시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기업들의 무(無) 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들은 동일한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에만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진입·영업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 2021; 김자봉, 2021; Oliver Wyman, 2020).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론에 입각한 행위기반 규제 필요성이 주장된다. 동일한 금융상품을 판매·중개한다면 플랫폼 역시 전통적 금융판매 채널과 동일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금융위원회, 2021; 윤민섭, 2020; 김범준·엄윤경, 2019).⁵⁾

⑤마지막은 “금융안정을 위한 규제론”이다. 이 주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론과는 달리, 다른 위험에 대해서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빅테크 기업의 경우 금융 시스템에 더 큰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이 주장은 플랫폼 기업의 금융복원력(Financial Resilience)과 운영복원력(Operational Resilience)을 지키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한다. 이 주장은 나아가, 행위기반의 규제보다 그룹 기반(Entity-Based)의 규제를 옹호한다. (구본성, 2021; F.Restoy, 2021; J.Crisanto et al, 2021; BIS, 2020)

본고 역시 위의 국내외의 플랫폼 규제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본고는 금융서비스의 플랫폼 비즈니스화의 핵심적 양상으로 “임베디드 금융”을 제시하고, 이러한 금융혁신 트렌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에 진출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로운 도전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혁신의 촉진, 공정경쟁의 확립,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본고는 플랫폼 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입함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금융혁신의 양상을 살펴보고, 금융산업의 플랫폼화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규제 정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II 장에서는 오늘날 금융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양상을 정리해보았다. III 장은 금융산업의 플랫폼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살펴본다. IV 장에서는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의 방향을 제시한다.

5) 우리나라 정부도 금융산업의 플랫폼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영업행위의 등장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과 IT 기술의 융복합 추이에 맞추어 마이데이터 산업도입(2018.7.18.), 오픈뱅킹 구축(2019.2.25.),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도입(2020.7.26.) 등과 같은 금융산업의 플랫폼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관련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행위로 판단(2021.9.7.)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기로 법령을 해석한 것은 금융의 플랫폼화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II. 금융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

1. 금융산업 플랫폼화의 양상

금융산업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플랫폼 비즈니스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비금융 빅테크 기업은 ①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의 방식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자사의 비금융 플랫폼에 탑재하고 있다. 메신저, 쇼핑, 여행, 게임 등의 소비과정에 금융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전환비용을 줄이고,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②마이데이터 산업과 ③P2P 금융업을 통해 금융산업의 플랫폼화를 주도하고 있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은 대형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금융업의 플랫폼 비즈니스화를 촉진하고 있다.⁶⁾ 또한, 전통적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조각투자, 비상장증권투자, 대출서비스, 가상자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P2P 비즈니스도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주된 플랫폼 비즈니스다.

전통적인 금융회사도 플랫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도 금융회사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은행들의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④오픈뱅킹 서비스는 대표적인 사례다. 오픈뱅킹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 금융회사들의 플랫폼 경쟁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에서 배달, 쇼핑, 휴대폰업 등과 같은 비금융 사업으로 업무를 확장하여 생활 밀착형 종합 플랫폼으로의 변신도 시도하고 있다. (⑤ 디지털 유니버스 банк 전략)

6) 본인의 신용정보를 개방·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금융산업의 제조와 판매 분리가 가속화되고,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자문 플랫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표2]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금융산업 플랫폼 비즈니스화의 양상

주체	빅테크		핀테크	금융회사	
유형	임베디드 파이낸스	마이데이터 산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P2P 금융	오픈뱅킹	디지털 유니버스뱅크 (비금융업 진출)
특징	비금융회사가 자사 플랫폼에 금융기능을 내재화	흩어져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집중해 제공하는 금융정보 플랫폼	금융회사의 중개없이 사적 개인간에 금융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	코어뱅킹 서비스인 예금과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여 제공	금융사가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여 고객경험을 확장 (Digital Universe Banking)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파이낸셜 · 카카오페이 · 토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뱅크샐러드, 핀크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KB, 농협 등 전통적 금융회사 등 55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투자연계업 · 뮤직카우 등 조각 투자 플랫폼 · 업비트,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들의 Super App, One App 전략 · 은행의 배달 택배 쇼핑, 휴대폰업 진출

* 주) 이 표는 대표적인 전략들을 열거한 것이며, 실제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여러 전략을 혼합한 형태로 플랫폼 비즈니스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의 확산

임베디드 금융이란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 기능을 내재화하는 것을 말한다(신경희, 2021).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제공하는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복합 서비스다. 임베디드 금융은 주로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한 빅테크 기업 주도의 금산결합을 의미한다. 이미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비금융 서비스에 금융기능을 탑재하여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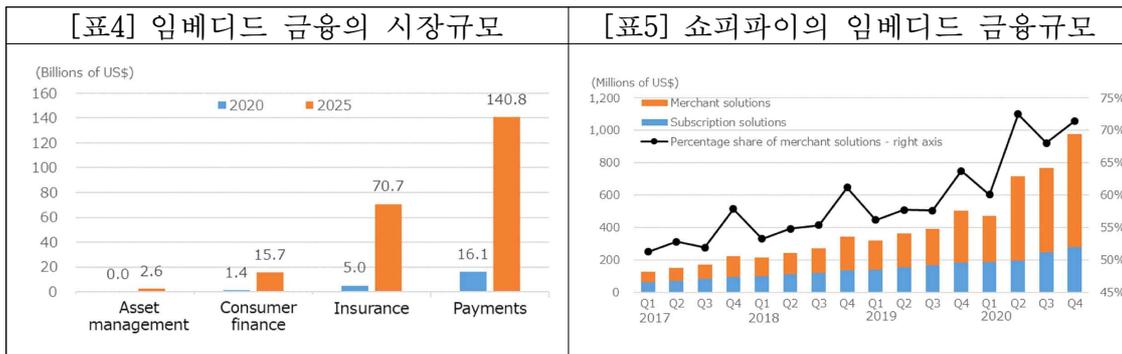
임베디드 금융은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금융회사(Containers), 금융회사(Providers), 핀테크(Enablers), 고객(Users)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와 금융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연결하여 고객들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으며, 비금융회사의 확대된 수익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비금융회사는 기존 서비스를 금융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풍부한 고객 데이터를 금융서비스에 접목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⁷⁾

7) 알리바바는 ‘화베이’ 라는 인터넷 신용카드를 2015년 4월 출시했으며 지금은 사용자가 4억 명이 넘는 정도로 급성장했다. 화베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인이 대출받기 쉽지 않은 중국의 경제환경도 있지만, 알리바바 쇼핑몰이라는 캠프트

[표3] 임베디드 금융 생태계의 참여자 및 역할분담

구분	특징
금융회사 (Provider)	임베디드 금융의 한 종류인 BaaS(Banking as a Service)를 활용하여 새로운 고객 기반 마련 및 새로운 수익 창출 가능
비금융회사 (Container)	기존 서비스를 금융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고, 풍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에 접목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추천 가능
핀테크기업 (Enabler)	핀테크 회사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
상품이용 고객 (User)	다른 서비스 공간에 별도로 접속하지 않아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련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편리성 증대

임베디드 금융은 온라인 상거래의 확산과 비대면 금융의 확산으로 인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Ohnishi, 2021). 미국의 자산관리 회사인 라이트이어 캐피탈(Lightyear Capital)은 임베디드 금융시장 규모가 미국에서만 2020년 225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2298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는 2030년까지 약 7조 2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Forbes, 2020).



* 출처: Lightyear Capital(2020), Ohnishi(2021)

임베디드 금융의 성장은 금융회사의 역할을 변모시킨다. 임베디드 금융이 확산되면서 고객과의 접점은 대규모 빅테크 회사가 전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기술을 통해 빅테크 플랫폼에 금융서비스(Bank-as-a-Service)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임베디드 금융과 관련한 핀테크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Conerstone Advisors(2021)의

마켓과 연계한 마케팅의 힘이 컸다. 화베이를 통해 결제하면 과거적인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등 알리바바는 화베이의 고객층을 넓혔다. 미국의 자동차회사 GM의 앨리뱅크(Ally Bank)도 캠퍼브 마켓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다. 앨리뱅크가 제공하는 오토론을 이용하여 GM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일본의 쇼펍몰인 라쿠텐의 라쿠텐 은행 역시 그룹 계열사를 활용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라쿠텐 은행의 전략은 슈퍼포인트 서비스다. 라쿠텐 그룹 내의 모든 계열사를 연결해 포인트를 통합했으며, 쇼펍몰에서 쌓은 포인트를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라쿠텐은 슈퍼포인트 전략을 통해 계열사의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BaaS 서비스를 개발 중인 미국의 은행은 전체의 10%에 달하며⁸⁾, 대다수의 은행은 핀테크 기업 및 BIP(BaaS Infrastructure Providers)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Forbes, 2022). 예컨대, 미국의 신용카드사인 비자(VISA)는 유럽의 오픈뱅킹 플랫폼인 톱크(tink)를 2021년 인수했으며, 스페인의 은행그룹 BBVA는 신용카드, 결제, 예금기능 등을 위한 API 제품군을 제공하는 BBVA 오픈 플랫폼을 2019년 미국에 출시했다.

[표6] 국·내외 임베디드 금융의 대표적 사례

기업	사례
쇼피파이(Shopify)	- 핀테크 업체 어필(Affirm)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사 플랫폼 이용 고객이 일정 금액의 상품을 무이자 할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부금융 서비스 제공 - 신용카드가 없더라도 쇼피파이 앱 내에서 체크아웃을 할 때 제공되는 옵션을 선택
아마존(Amazon)	- 입점업체 대상 대출 프로그램인 아마존 렌딩(Amazon Lending)을 운영
네이버파이낸셜	-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통한 신용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 등에도 진출 예정
카카오	- 결제, 은행, 증권에 이어 디지털 손해보험 인가

임베디드 금융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금융서비스의 “언번들링(un-bundling)”이다. 전통적 금융회사들과 같이 지급결제,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에 이르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체, 분리하고 하나의 서비스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해체된 서비스를 고객들의 니즈에 맞추어 “리번들링(re-bundling)”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한다(Nomakuchi, 2018). 언번들링과 리번들링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잡한 금융서비스를 비금융 서비스와 전환비용 없이 매끄럽게 결합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금융서비스가 언번들링, 리번들링되는 현상은 금융당국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부여하고 있다. 언번들링 과정에서 엄격한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리번들링 과정에서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이 결합하며 “금융안정”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의 집중문제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우위가 만들어내는 시장지배의 문제도 오늘날의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8) API에 투자 또는 개발을 진행하는 은행/신용조합의 비율은 '21년 47%, '22년 25%로 집계되었다.(Forbes, 2021.12)

Ⅲ. 금융산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제들

금융혁신을 지원해야할 금융당국의 관점에서도 새로운 정책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할 정책과제는 ❶규제수요와 규제공급의 불일치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임베디드 금융이 금융혁신의 주된 양상이 되면서 등장한 과제다.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급변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체계는 낡은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어 기업들의 금융혁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산결합에 따라 ❷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 문제도 새로운 정책과제다. 금산결합에 따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비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위험요인이 금융분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비즈니스모델과 인가단위의 불일치(Partial Business vs. Whole License)

임베디드 금융의 확산에 따라 빅테크들은 금융업무를 해체(un-bundling)하고 재조합(re-bundling)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삼성전자, SKT 등의 빅테크들이 자사의 플랫폼에 탑재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들은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전체(whole) 금융서비스가 아니라, 아주 작은(partial) 금융서비스에 불과하다.

예컨대,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는 신용카드사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30만원 수준의 소액 후불결제(여신기능)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은행과 같은 예금수취 기능이 아니라 자사에 선불지급된 충전금에 대한 소액의 이자 제공을 희망한다. 또는, 에어비엔비의 경우 보험업의 모든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의 여행자 보험만을 중개(판매)하기를 희망한다. 어떤 플랫폼은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만 수집하기를 바랄 수도 있으며, 고객들의 분산된 은행계좌에 지급명령만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빅테크 기업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가단위는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행위에 기초한 부분인가 방식이 아니라, 업권에 기초한 전체인가 방식⁹⁾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게 은행·보험·금융투자로 업권을 나누어 인허가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금융안정의 제고라는 가치 때문이다.

9) 예컨대, 예적금의 수입, 대출,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업 인가가 필요하며, 보험의 인수,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업 허가가 필요하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이 필요하다.

예금·대출·지급결제 등 여러 핵심업무를 묶어서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금지하거나 은행과 보험업의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과 리스크 전이의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수요는 변화를 겪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쇼핑, 여행, 메신저 등 비금융 서비스의 소비과정에서 전환비용 없이 소액 금융서비스를 소비하기를 원한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도 임베디드 금융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과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인가단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오늘날의 금융법규는 (월 30만원 이내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네이버페이에게 신용카드업 인가를 강요하고 있으며, 30만원 가량의 충전금에 소액 이자를 지급하고자 하는 카카오페이에겐 은행업 인가를 강요하는 셈이다.

즉, 금융서비스가 언번들링(un-bundling)되고 있다면, 금융업의 진입장벽인 인가단위도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 기반의 작은 단위로 언번들링(un-bundling)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인가단위는 업무의 효율성, 금융안정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단위를 작은 단위로 나눌 필요는 존재한다.

2. 금산결합에 따른 금융안정의 문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양면성을 지닌다. 금융 서비스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는 편익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금융회사간, 금융과 비금융의 결합을 통해 금융안정에 새로운 위협요인을 창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위협요인은 빅테크의 비금융사업(ICT) 부문이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그룹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위협요인이다. 그러나 금융과 ICT 간의 결합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소스코드의 결합 등 사이버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판매 대리점으로서의 빅테크의 도덕적 해이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R.Zamil & A.Lawson(2022)는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인을 이해상충의 가능성, 시장경쟁 저해, 시스템 리스크의 전

이, 복잡한 조직구조로 인한 감독의 어려움, 은행위기시 모회사의 지원의 어려움 등 5가지로 분류한다. 특히, 빅테크가 은행업을 수행할 경우 이 그룹은 대마불사(TBTF)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 사이의 감염 및 파급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편, 은행업에 진출한 빅테크나 핀테크의 경우 다양한 금융 및 비재무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자회사, 합작 투자 및 계열사와 함께 운영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복잡한 조직 구조는 기업 그룹 내 금융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감독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표7] 빅테크, 핀테크의 은행소유에 따른 위기 가능성 평가

	이해상충	독점문제	시스템리스크	통합감독곤란	모회사 재정
소형 핀테크 기업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대형 핀테크 기업	중간	낮거나 중간	중간	중간	높거나 중간
빅테크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낮음
상업기관	높음	높음	높음	높음	-

* 출처: FSI Analysis, BIS(2022)

IV. 새로운 금융규제 프레임워크

앞서 살펴본 금융혁신의 트렌드와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감안하면, 금융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규제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에 대한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다. 임베디드 금융의 확산과 금융산업의 플랫폼화에 따라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언변들링, 판매채널 변화, 타 서비스와의 결합, 리변들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이전에 있던 금융서비스들도 언변들링을 통해 전혀 다른 채널로 공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규제공급(현실의 규제)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과거와 같은 오프라인 비즈니스, 대면방식의 기술환경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지금의 금융규제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규제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한편, 금융회사도 비금융회사와의 결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인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금융복원력(Financial Resilience)과 운영복원력(Operational Resilience)을 갖추도록 유도해야한다. 금융회사와 ICT 간의 제휴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도 클라우드 사업자, 핀테크 기업 등 제3자 기업(Third Party)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자 기업, 또는 비금융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중단상황에 대응하여 금융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 그룹 내에 충분한 자본금을 구비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비금융서비스와의 결합이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모든 영업활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규칙중심의 규제” 보다는 “원칙중심의 규제”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을 존중하고,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갖출 필요가 있다.

1. 새로운 규제수요에 대해: 스몰 라이선스 방식과 금융안정

가. 스몰라이선스 제도 개요

스몰라이선스 제도는 금융서비스를 업무범위 등에 따라 세분화한 후, 인허가 요건과 영업규제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완화하는 제도이다. 스몰 라이선스 제도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인도, 스위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스몰라이선스 제도는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입을 촉진하고, 이 기업들을 금융규제 체계 하에 둘 수 있어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8] 해외 주요국이 도입한 스플라이센스의 방식과 사례

방식	사례
업무범위를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OCC는 특수목적은행(Special Purpose National Bank)의 하나로 Fin-tech Charters 도입을 발표(2018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기업에 은행규제를 적용하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이 은행에게는 예금을 제외한 대출, 수표지급 업무만을 허용. ○ ECB는 Fin-tech Credit Institution License 신설(201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서비스, 청산, 연기금관리, 증권중개, 투자자문 업무 불가능 ○ 인도중앙은행은 소액저축, 지급결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Payment Bank” 라는 인가단위를 신설(2014년 11월) ○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업무범위에 따라 Licensed Bank, Restricted Licensed Bank, Deposit-Taking Companies 등 3가지 은행인가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tricted Licensed Bank는 수시입출식 예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업무 범위 제한 - Deposit Taking Companies는 소비자금융, 무역금융, 유가증권 업무 등 특화영역 업무를 수행
영업규모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FINMA는 은행법을 개정하여 2019년 Fintech License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 스위스 프랑 이하의 예금만 유치가능, 이자지급, 투자업무 불가능 ○ 일본은 일반보험회사(최저자본금 10억엔)와 구분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최저자본금 1,000만엔) 제도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연간보험료 수입은 50억엔 이하로 제한되며, 보험금액의 상한도 제한됨(사망보험 300만엔, 의료보험 80만엔)
영업기간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은 신규은행 인가시 12개월간의 Mobilisation 단계를 도입하여,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하며 투자금을 유치 ○ 호주는 은행업무(승인예금수취기관) 인가시 Direct ADI와 Restricted ADI로 License를 구분하여 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tricted ADI는 최대 2년동안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하며, Direct ADI 수준의 건전성 요건 등을 보완

나. 우리나라의 스플라이센스 제도 현황

우리나라에도 은행업, 보험업, 전자금융업을 중심으로 스플라이센스 제도,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¹⁰⁾들이 도입되어 있다.

은행업권에는 시중은행과 구분되는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인가단위가

10) “그와 유사한” 제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해외 주요국의 스플라이센스의 경우 ①업무범위를 세분화하거나, ②영업규모를 제한하거나, ③영업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인 데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스플라이센스로 간주할 수 있는 일부 제도들은 ①영업구역(지방은행)이나 ②영업방식(인터넷전문은행)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한다.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대신(영업구역의 제한), 완화된 설립자본금 규제, 영업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업의 인가단위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자금융의 방법으로만 영업을 하는 대신(영업방법의 제한), 완화된 설립자본금 규제와 소유제한 규제를 받는 은행업의 인가단위다. 한편, 은행의 외국환 업무 중 해외송금 업무(3,000달러 이하)만을 수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도 외국환거래법에 도입되어 있다.

보험업권에도 스플라이센스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니보험을 공급하는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다. 기존에는 보험업을 허가받기 위해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2021년부터 자본금 요건이 보험업법상 10억 원으로 완화된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5년 도입된 “간단손해보험대리점”도 보험업권에서 도입된 스플라이센스다. 이는 본업이 보험이 아닌 업체도 간단한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중고거래업체, 여행사, 이동통신사 등이 현재 간단 손보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전자금융업권은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스플라이센스 제도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소규모 전자금융업이라는 스플라이센스가 존재한다. 전자금융업 중 분기별 전자금융 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¹¹⁾를 소규모 전자금융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2016)하였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안)에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1.5억원으로 설정된 지급지시전달업¹²⁾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등록요건으로 전자금융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스플라이센스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11) 전자금융업자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에 한하며, 이들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각각 10억원, 5억원, 5억원이다.

12) 고객의 계좌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에 지급인의 지급지시를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표9] 우리나라의 스플라이센스(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

분류	세부내용	방식
은행업	○ 지방은행(설립 자본금 250억원)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으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제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제한 규제가 완화됨	영업구역을 제한
	○ 인터넷전문은행(설립 자본금 250억원)은 전자금융의 방법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법인(중소기업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영업방식을 제한
	○ 소액해외송금업은 은행의 해외송금 업무만을 수행하나, 건당 지급한도가 3,000달러로 제한(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은 10억~20억원 수준)	업무범위를 세분화
보험업	○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는 최소 자본금이 20억원이며, 미니보험을 제공	영업규모를 제한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본업이 보험이 아닌 업체도 간단한 손해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업무범위를 세분화
전자금융업	○ 분기별 거래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규모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으로 두고 자본금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	영업규모를 제한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안, 국회계류중)은 설립자본금이 1.5억원에 불과한 지급지시전달업(MyPament)을 신설	영업방식을 제한
여신전문 금융업	○ 신용카드부가통신업 등록시, 3만개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은 10억원으로 완화	영업규모를 제한

다. 스플라이센스 도입과 금융안정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플라이센스 제도는 주요 해외국가의 스플라이센스 사례와는 작동방식이 상이한 측면이 있다. 즉, 해외의 스플라이센스 사례들은 주로 업무범위를 세분화하는 방식(Un-bundling)인 반면, 우리나라의 스플라이센스는 주로 ❶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지방은행), ❷ 영업방식(인터넷전문은행)을 제한하거나, 또는 ❸ 영업규모(소액해외송금업, 소액전자금융업)를 제한하는 방식(Restriction)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영업구역과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방식의 스플라이센스 제도는 임베디드 금융이 요구하는 규제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플랫폼 기업들은 주된 비즈니스 모델(비금융)에 금융업을 부가적으로 탑재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주로 업무범위를 “세분화” 하는 방식에 의해서 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베디드 금융의 트렌드에 맞추어 금융서비스의 언번들링과 리번들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업무방식을 세분화하는 방식의 스플라이센스 인가 정책

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도와 같이 각 업권의 고유업무를 언변들링하여 예금과 지급결제만을 수행하는 소위 “페이먼트 은행”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라이선스를 만드는 것은 업무 방식을 세분화하는 방식의 스플라이센스다. 물론,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전자금융법 개정안(윤관석 의원안)에서 제시된 바 있다. 계좌기반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바로 그것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사실상 여수신 기능이 제한된 은행업 스플라이센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업무단위를 쪼개는 방식의 스플라이센스 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영업규모에 제한을 두는 방식도 임베디드 금융과 부합할 수 있는 차선택이 될 수 있다. 즉, 각 업권의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되, 여신이나 수신기능의 상한을 둔 “미니금융” 방식이다. 소액으로 예금, 대출 한도를 둔 “미니은행업” 라이선스나, 소액으로 신용카드 여신기능을 제공하는 “미니신용카드업”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것이 그 사례다.

그러나 스플라이센스의 도입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큰 인허가 단위는 단일 금융기관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보험(co-insurance) 효과가 존재하며, 금융감독의 측면에서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금융회사가 충분한 자본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하나의 사업만을 수행할 때의 부실화 가능성을 $(1-p)$ 라고 두자. 그러나 이 금융회사가 n 개의 독립적인 사업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면, 이 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1-p)^n$ 으로 감소하게 된다(상세내용은 부록A 참조). 즉, 큰 인가단위는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그 논리적 정당성이 존재한다. 하나의 금융회사(인허가 단위)에 다양한 서비스를 허용하여 위험을 분산하고는 효과를 누리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반대로 해석하면,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스플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정책은 대형 금융회사가 누리고 있는 위험분산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업무단위를 세분화하는 스플라이센스 인허가 방식을 채택한다면, 복합적 업무 수행에서 발생하던 위험분산 효과의 상실분까지를 감안하여 충분한 규모의 자본확충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금산결합에 따른 금융복원력과 운영복원력: 그룹기반의 금융규제

임베디드 금융의 확산에 따른 금융의 플랫폼화는 한 복합기업 집단 내에서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이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어떤 복합기업 집단이 높은 수준의 위험에 대응한 충분한 자본(S^*)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금산결합은 해당 기업집단의 부실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즉, 금융과 비금융이 독자적으로 수행되었을 때의 부실위험은 $(1-p)$ 로 주어지나, n 개의 독립적인 자회사가 존재하는 복합기업집단의 부실화 가능성은 $(1-p^n)$ 으로 상승하게 된다.¹³⁾ (상세내용은 부록A 참조)

위의 모형은 다양한 기업이 존재하는 복합기업 집단의 경우 위험전이와 위험분산 효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공존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n 개의 자회사가 직면하는 S_n 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그룹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그룹 차원의 건전성 유지는 행위기반의 규제(Activity-based)로만 달성하기 어려우며, 그룹기반의 규제(Entity-based)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BIS 등은 금산복합 금융그룹의 운영복원력(Operational Resilie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복원력이란 바젤의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기업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BCBS, 2020) 재무 건전성 중심의 금융복원력(Financial Resilience)에 비해 넓은 개념으로, 재해 등 사고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운영 중단 상황을 예방·복구·학습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일컫는다.

전통적으로 “시스템적 위기”는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해 야기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빅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빅테크의 경우에도 시스템적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빅테크 기반의 금산복합 그룹의 경우 금융 리스크 뿐만 아니라, 금융기업이라면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운영 리스크(사이버 보안, 업무의 외부위탁, 재해로 인한 영업중단 등)에도 직면하기 때문이다.

13) 물론, 그룹 차원에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업의 다각화는 위험전이가 아닌 위험분산이라는 순기능으로 역할할 것이다. 이 경우 역시 그룹 차원에서 충분한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원칙중심의 금융규제

스플라이센스의 도입은 금융업무간 공동보험(co-insurance)의 효과를 제거하고 비금융부문발(發) 리스크의 그룹내 전이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금융 그룹은 사업구조나 형태, 비금융 계열사의 업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스플라이센스의 도입과 금융산업의 플랫폼화는 금융회사의 영업모델과 사업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의 효율성이 저하될 위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금융감독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도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업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심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준칙중심의 감독(Rule-based supervision)” 보다는 금융회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원칙중심의 감독(Principle-based supervision)” 이 효과적일 수 있다. 원칙중심의 감독이란 금융감독에 있어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보다는 규제의 원칙과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감독당국은 금융안정을 위한 상위원칙과 최소한의 규제만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재량과 자율로 세부적인 달성방안을 마련하는 규제방식이다.

원칙중심 감독의 강점은 규제체계의 간소함과 명료함이다. 금융산업의 플랫폼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빅테크 기반의 금산결합회사의 영업행위는 예단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복잡해져갈 것이다. 이렇게 영업행위의 복잡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과거 준칙중심의 감독체계는 효과적일 수 없다. 영업방식은 복잡해져 가고, 금융위험 요인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져 가는데, 준칙중심의 감독체계는 세부적인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만을 평가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준칙중심의 규제체계를 고수한다면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한 규제를 보완하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금융규제가 발전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현재보다 훨씬 복잡하고 방대한 금융규제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제의 후행성도 준칙중심 규제가 지닌 문제점이다(이성복·이승진, 2015). 준칙중심의 규제는 그 해석과 적용이 유연하지 못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시장을 시의성 있게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규제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하여 시의성을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쉬운 원칙중심의 규제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원칙중심의 감독은 규제당국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에 적합한 감독방식이다. 복잡성과 역동성이 높은 분야일수록 사업 내용과 그에 수반하는 리스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플라이센스를 통한 금산결합이 이루어졌거나, 금융산업의 플랫폼화가 진전된 분야가 바로 그러한 분야가 될 수 있다. 특히, 금융상품의 판매방식이나 수단이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 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나 “영업규제” 분야에는 보다 유연한 “원칙중심의 규제”가 준칙중심의 규제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자본 적정성 관리, 자산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건전성 규제” 분야는 대체적으로 원칙중심의 규제가 적합하지 않은 분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금산결합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금융단일의 사업모델과 달리 비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전형적 리스크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양한 비금융 산업과 결합함에 따라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비금융 산업발(發) 리스크를 미리 예단하기는 더욱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전성 규제 분야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금융산업 이외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면 상위 원칙만을 제시하는 “원칙중심의 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논의의 한계

금융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화는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정책적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여 금융업과 ICT 기술의 융합을 뒷받침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주장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주로 금융회사들의 시각에서 금산결합을 바라보고 있다. 즉, 금융회사 주도의 플랫폼 비즈니스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들인 것이다. 반대로, 이 글에서는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트렌드로서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는 임베디드 금융을 제시하고, 빅테크·핀테크 주도의 금융 플랫폼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분석해보았다. 업무단위를 세분화한 스플라이센스의 도입과 금융안정을 위한 그룹단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를 제안

해보았다.

비록 이 글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 다루지 못했지만, 금융산업의 플랫폼화는 다른 이슈들을 수반하고 있다. 바로, 데이터 독점의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의 문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확립 등의 문제다.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우위를 바탕으로 많은 산업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했으며, 앞으로 본격화될 금융 플랫폼 경쟁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정경쟁의 이슈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만약 “기울어진 운동장”, “금융회사와 빅테크간 공정경쟁의 조성” 과 같은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본다면, 이 글에서 제시한 정책제언들의 방향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금융안정, 금융혁신이라는 정책목표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정책목표보다 우선한다는 전통적 시각에 따라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독자들도 이를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부록 A] 사업다각화에 따른 위험전이 및 위험분산 효과 (A.Guembel, 2017)

1. 모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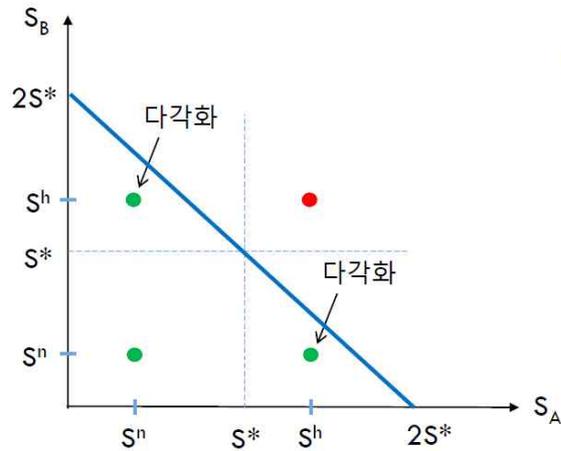
한 금융회사가 A, B라는 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예컨대 업무 A는 신용대출업무, 업무 B는 증권투자업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사업 A와 B는 각각 S_A , S_B 라는 충격에 노출된다. 충격의 크기는 일반적인 수준(S^m)이거나, 높은 수준(S^h)의 두 가지인데, 일반적인 수준의 충격이 실현될 가능성은 p 라고 하자. 그리고 A와 B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본수준은 S^* 로서, S^* 이하의 충격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S^m < S^* < S^h$)

2. 충분한 자본수준을 갖추었을 때: 사업다각화의 위험감소 효과

먼저, 업무 A 부분에서 높은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만약 A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확률은 $(1-p)$ 이다.

그러나 어떤 금융회사가 업무 A와 B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이 금융회사는 업무 A와 B에 각각 대응하기 위해 $2S^*$ 만큼의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즉, $2S^* > S^h$ 인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업무 A와 업무 B 모두 S^h 를 겪을 때에만 부실이 발생한다($S_A + S_B > 2S^*$). 그러나 독립적인 업무 A와 업무 B가 동시에 높은 수준의 충격(S^h)을 겪을 확률은 $(1-p)^2$ 이며, 이는 업무 A나 업무 B를 단독으로 수행할 때의 부실확률인 $(1-p)$ 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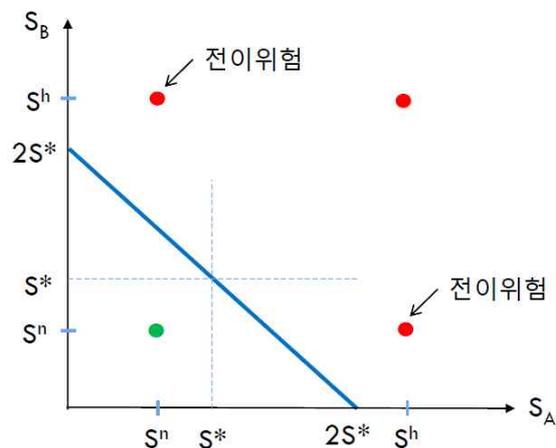
즉, 금융회사가 각각의 업무에 대응한 충분한 자본(S^*)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업의 다각화는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한다.



3. 충분한 자본수준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업다각화의 위험전이 효과

반대로, 해당 금융회사가 높은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여 충분한 자본(S^*)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는 높은 수준의 위험(S^h)이 사업 다각화시의 자본 규모($2S^*$)를 넘어서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다각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즉, 해당 금융회사는 사업 A나 사업 B 중 최소한 하나에서만 높은 수준의 위험(S^h)이 발생해도 금융부실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최소한 하나의 사업부문에 서 높은 수준의 위험(S^h)이 발생할 가능성은 $(1-p)^2$ 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지 않았을 때의 부실위험 $(1-p)$ 보다 부실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의 확장

이상의 모델은 한 금융회사 내의 사업부문 A, B가 아니라, 한 기업집단 내의 기업 A, 기업 B로 확장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그룹 내의 은행 A, 보험사 B로 상정할 수도 있으며, 복합금융그룹 내의 A 금융회사, B 비금융회사로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델은 동일한 금융그룹 내에 여러 기업이 영업할 경우 어떠한 수준의 위험(S^h)에 직면하느냐, 또는 위험에 대응한 충분한 자본규모(S^*)를 갖추었느냐에 따라 위험의 전이와 분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⁴⁾ 아울러, 동일한 금융그룹 내에 여러 기업이 존재할 경우 위험전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A, 기업 B가 직면하는 위험수준(S_A, S_B)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그룹기반의 건전성 관리)을 보여주고 있다.

14) 이는 Acemoglu et al(2015)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충격의 크기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정도가 달라진다. 즉, 작은 충격의 경우 높은 연결성이 안정을 의미하지만 큰 충격 하에서는 연결성이 높은 네트워크가 전이위험에 더 취약해진다.

참 고 문 헌

- 강신원 · 이중만, 2016, 모바일 금융 서비스와 은산분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3(2), 195~206.
- 구본성, 2021, BigTech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요이슈와 정책적 논의, KIF 금융 분석리포트, 2021-02
- 금융위원회, 2021,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보도자료(9.7.)
- 김동환, 2021, 저성장 · 디지털 시대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KIF 연구보고서 2021-08
- 김범준 · 엄윤경, 2019,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법학논총, 43권 2호, 185-224
- 김상유 · 김길선, 2020, 금융서비스 산업의 프로세스혁신과 진화에 관한 연구:해외송금 기능을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제24권 제3호, 29-58. 한국경영학회
- 김상조, 2016, 비은행권 금산결합의 양상 변화 및 시사점, 경제개혁리포트, 2016-02호, 1-33
- 김자봉, 2020, 은행은 여전히 특별할 것인가? 세 가지 경제적 및 법적 쟁점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3권 제1호(2020.5)
- 김자봉 · 이대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영향과 시사점: 아마존의 사례를 중심으로, KIF 금융조사보고서 2020-01, 한국금융연구원
- 김자봉, 2021,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따른 위험 유형과 정책과제, 주간금융브리프 30-23, 한국금융연구원
- 김현수, 2020, 오픈뱅킹시대의 금융플랫폼 형태와 경쟁요소, 신산업경영저널, 제38(2)

호, 159-186

마셜 벤 엘스타인 등, 2017, 플랫폼 레볼루션, 도서출판 부키

박창욱·윤창술, 2018,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18권 4호, 401-432. 한국법정책학회

삼정KPMG연구소, 2017, 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과 만나다, 삼정인사이트 통권 제 53-2017호

삼정KPMG연구소, 2019,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전략, 삼정인사이트 통권 제 67-2019호

삼정KPMG연구소, 2021, 은행산업에 펼쳐지는 디지털 혁명과 금융패권의 미래, 삼정인사이트 통권 제 73-2021호

신경희, 2021, 임베디드 금융의 성장과 규제, 자본시장포커스 2021-15호, 자본시장연구원

윤민섭, 2020, 금융상품 판매채널로서의 금융플랫폼, 금융소비자연구 10권2호, 5-25.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이보미, 2020,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KIF VIP 리포트, 2020-17, 한국금융연구원

이성복·이승진, 2015, 영국의 금융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 체계 변화와 시사점, 조사보고서 15-03, 자본시장연구원

이효경, 2019, 금융서비스분야에서 플랫폼비즈니스의 법적 이슈 및 앞으로의 과제(횡단적 규제체계, 오픈뱅킹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3권 제3호. 331-358

이효경, 2021, 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사점, 상사법 연구 39권 4호, 273-309, 한국상사법학회

하나금융연구소, 2021,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이슈분석 제 11권3호

BCBS, 2020, Principles for Operational Resilience, Consultative Document

Forbes, The Top 5 Trends In Fintech And Banking for 2022, (2021.12.13)

Forbes, Uber' s Departure From Financial Services: A Speed Bump On The Path To Embedded Finance, (2020.8.3.)

FSB, 2019, BigTech in finance: Market developments and potential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Guembel, Alexander, 2017, Diversification and Contagion: Connections and some regulatory implications, Belgian Financial Forum.

Han, JH. & KH. Kang, The Effects of Fintech Prepaid Services on Competition and Stability in Banking, 금융연구 31권4호, 35-49, 한국금융학회

Laboure, Marion & N. Deffrennes, 2022, Democratizing Finance: The Radical Promise of Fintech, Harvard University Press

Macey, Jonathan R., Geoffrey P. Miller, and Richard Scott Carnell, 2001, Banking Law and Regulation.

Brunnermeier, Markus K., Harold James, Jean Pierre Landau, 2019, The Digitalization of Money, NBER Working Paper.

Nomakuchi, Takao, 2018, A Case Study on Fintech in Japan Based on Keystone Strategy, 2018 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PICMET), IEEE

Ohnishi, Masaru, 2021, New Digital Financial Services offers the Prospect of High Customer Retention; Expectations for the Growing Trend of Embedded Finance, Mitui & Co. Global Studies Institute Monthly Report, March 2021

Oliver Wyman, 2020, Big Banks, Bigger Techs?

WEF, 2019, Platforms and Ecosystems: Enabling the Digital Economy, White Papers.

Zamil, Raihan, and Aidan Lawson, 2022, Gatekeeping the gatekeepers: when bigtechs and fintechs own banks- benefits, risks and policy options, FSI Insights No 39, BIS

A Study on the Establishing New Financial Regulation Framework (According to the Platformiz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Sungho Kang*

Big tech companies are entering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embedded finance. Accordingly, the platform busi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is also progressing. However, the current permission framework of financial industry has structural difficulties in supporting financial innovations such as unbundling and rebundling of financial services. Meanwhile, as financial innovation that combines financial services, non-financial services, and ICT deepens, the risk of accidents from the non-financial sector being transferred to the financial sector is increasing. In this regard, this paper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small licenses framework, a principle-based supervisory system, and entity-based financial regulations.

*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Korea
/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Korea